

FRP Rod 보강공법

신소재 재료인 FRP Rod를 이용해 노후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하력을 보강하는 신공법이 개발됐다. 동원건설이 개발해 건교부로부터 건설신기술 제404호로 지정받은 이 공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하력 증진을 위한 보수·보강 공법으로 잔류변형률을 갖는 FRP Rod를 이용, 연성거동을 확보하는 구조로 돼있는데 보강 후 안정성과 신뢰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공법의 핵심기술은 기존의 취성적 파괴성향을 받는 FRP 복합소재를 FRP Rod로 대체, 비부착 표면매립 및 단면확대 복합보강공법에 적용함으로써 보강된 구조물의 연성을 확보해 안전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이다. 단면확대시 모르타르를 고압의 스프레이식으로 시공함으로써 손미장에 의한 단점을 해소, 시공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모체와의 부착력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골재 시공지침 마련 시급

매년 1천500만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에는 연간 1억톤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면서 관련업계의 건설폐기물 재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건설폐기물의 90%를 차지하는 폐콘크리트의 재활용은 천연자원 보존 등 환경 측면에서도 시급한 과제다. 재생골재 제조시스템구축과 함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는 등 재생골재의 품질확보, 산업규격, 시공지침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최근 이 같은 추세를 반영, 레미콘협회의 기술분과위원회(위원장 변근주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발표한 폐콘크리트 재활용 방안 보고서를 간추렸다.

건축물의 수명을 25년으로 가정할 경우 2001년에는 1천495만톤의 폐콘크리트가 발생되고 2020년에는 이보다 6.8배 많은 1억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저하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거 및 해체로 폐콘크리트 발생량이 증가 추세다.

현재 재활용 용도별로는 대부분 건설공사에 성토나 복구용으로 쓰이며 재생골재의 KS규격이 마련됐음에도 골재로서 재활용도는 낮은 수준이다. 재생골재의 품질저하원인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균열과 낮은 강성, 표면에 부착된 모르타르로 인한 공극과 높은 흡수율 및 배합설계상 어려움, 강도저하, 새로운 모르타르와의 부착력 저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흡수율과 모르타르 부착력을 제어하고 입도, 단위용적중량, 유해물 함유량을 제어해야 한다. 폐콘크리트의 재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배출단계에서 무분별한 해체 및 현장에서 성상별 분리작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수요자들도 하자발

생우려와 함께 시방서 등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재생골재별 사용가능치나 사용방법, 기술 등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폐기물 발생실태의 파악이나 분리배출, 재활용 계획수립 및 시행방안이 미비한 것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재생골재와 관련,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골재, 콘크리트용 재생골재, 도로 보조기층용 재생골재, 재생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 등이 한국산업규격으로 정비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생골재 콘크리트에 대한 규정은 제정되지 않아 앞으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규격의 제정과 정비는 물론 각종 시공지침과 설계지침이 정비돼야 한다.

활용방안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재생 굵은 골재의 경우 프리팩트 콘크리트나 콘크리트 2차제품, 다공질 콘크리트,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 재활용할 수 있다.

재생 잔골재나 미분은 인터록킹 블록과 콘크리트용 워커빌리티 개량제, 고형화에 의한 이용, 유동화처리용 고화재, 노상 및 노반의 안전처리재, 아스팔트 혼합물용 필러, 시멘트원료, 충전주입재, 토양개량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재생골재 활용확대를 위해서는 또 건교부나 환경부 등 정부기관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인센티브제나 산업규격정비, 골재수급대책과 품질·기술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며 수요창출을 위한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재생골재의 시공성 부족은 감수제 등 혼화재를 이용해 개선하고 이물질 제거설비 및 세정시설구축, 사용전 충분한 살수, 입도·입형의 조정 및 강도저하를 막기 위해 천연골재와 혼합사용 등도 고려돼야 한다.

△재생 굵은 골재의 재활용 방안

재활용방안	내 용
프리팩트 콘크리트	작게 부순돌을 프리팩트콘크리트에 사용하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서 이용하는 골재보다 큰 치수의 작게 부순돌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용도를 한정시켜 강도와 내구성에 관한 요구가 엄격하지 않은 구조물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없다. 보통 콘크리트와 비교해서 같은 수준의 내구성을 얻는 것은 어렵다.
콘크리트 2차제품	콘크리트 2차제품에 재생골재를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콘크리트 블록과 같이 규격치가 단순한 비교적 저강도의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재생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 건조수축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공질 콘크리트	재생골재는 보통 골재와 비교해서 흡수성(투수성)이 높다. 연속공극을 갖고, 투수성·투기성이 우수한 다공질 콘크리트에 재생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 요구되는 강도 또한 낮으므로 재생골재 사용이 적절하다.
아스팔트 혼합물	재생골재를 주골재로 하고, 필요에 따라 통상의 크러셔, 단입도쇄석, 모래, 석분 등의 보충재를 첨가한 재료에 소량의 아스팔트를 첨가하고, 플랜트에서 혼합한 기열아스팔트 안정처리혼합물을 도로포장의 상층노반으로 적용한다.
기층 및 표층용 기열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혼합물을 대상으로 기층 및 표층용 기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로서 재생골재를 사용한다. 재생골재는 부처모르타르 때문에 보통 쇄석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사용 장소는 간이포장과 비교적 경교통에 한정하고, 중교통은 대상 외로 한다.

△재생 잔골재, 미분(150 μ m미만의 세립분)의 재활용 방안

재활용 방안	내 용
인테리어 블럭	보통 인테리어블럭에는 1층형과 2층형이 있고, 2층형은 표층과 기층으로 구성된다. 기층에 비교적 포라스한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이 부분에 재생 잔골재 등의 재생골재를 사용한다.
고형화에 의한 이용	미분에 약간의 시멘트, 석회암 등을 첨가하고 물·분체비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혼합교반하여 고형화물을 제조한 후, 파쇄하여, 하층노반재, 뒤채움재, 매립재 등으로 이용한다.
노상 및 노반의 안정처리재	미분의 토립자 등과의 포출란 반응성을 이용해서 노상토와 토반재의 안정처리를 실시하기 위한 고화재로서 석회 등의 대체재로서 이용하는 것이다.
아스팔트 혼합물용 filler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석회함석분 대신에 미분을 이용하는 것이다. 미분은 처리기계에 의해서 입도분포가 달라지고 75 μ m 통과질량이 입도규격의 70% 이상이 되는 것이 적은 것 등으로부터 미분 100%를 필러로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시멘트원료	재생골재 생산시 발생하는 미분을 시멘트 원료로서 이용한다. 다소의 품질 저하가 있어도 고품질·공정생산의 클링커 원료로 혹은 다소의 품질저하를 인정한 혼합시멘트로 사용한다. 특히 시멘트의 부하요인이 되는 유기질 가연 성분 등의 함유량이 많은 경우는 클링커 숙성원료로 이용해서 무해화 또는 유용화를 도모한다.
충전주입재	콘크리트 미분말을 실드·터널의 시공에 텔보이드로의 충전주입재에 이용할 수 있다. 실드·터널의 충전주입재는 복공배면과 지산과의 공극을 충전하는 것에 의해 세그먼트의 안정과 누수의 방지, 또 주변지산의 이완과 침하를 막는 목적 등에 사용한다.
토양개량재	토양개량을 목적으로 미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미분을 이용하면 중화작용을 얻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추진

오는 2007년부터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는 일정 공정률 이후 분양하도록 하는 후분양이 의무화된다. 또 민간건설업체가 후분양을 할 경우에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후분양 활성화방안을 국무회의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월 3일 밝혔다. 건교부는 선분양방식을 일시에 후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공급 위축,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3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후분양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초기 선도단계(2003~2006년)에는 주공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단지 가운데 시범단지를 선정해 후분양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시범사업지역은 주공 인천 동양지구, 서울시 장지·발산지구 일부 단지 등이다.

민간부문은 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아파트의 경우 올해부터 40% 공정 후 분양을 하면 가구당 6천만원(금리 6%)까지인 기금지원 조건을 8천만원(금리 5.5%)까지 우대해 주기로 했다.

기금우대 조건은 내년에 공정 60%후 분양으로 확대된 후 2007년부터는 공정 80%후 분양으로 제한된다. 다만 전용 18.1~25.7평 이하 중형 아파트는 2006년부터 선분양하면 현행 기금지원이 중단된다. 분양기규제 대상인 60 m^2 이하 소형 아파트는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후분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지원조건을 우대해 줄 방침이다.

후분양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 기법을 개발하고 장기 주택자금 지원 인센티브 마련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설자금 공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활성화단계(2007~2011년)에는 공공부문의 경우 2007년에 공정률 40% 이후 분양하도록 하고 분양허용공정률을 2009년 60%, 2011년 80% 등 2년 간격으로 20%씩 높이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후분양제도가 활성화되면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10%에 이르는 2012년에는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쳐 전체 분양 아파트의 50%(28만가구중 14만가구)가 후분양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집중단속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외에 대여받은 기업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펼쳐진다.

노동부는 자격증 대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조해 대여자 및 대여받은 기업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기로 했다.

또 기업이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대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기업과 개인에게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노동부는 현행법으로 자격증 대여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법의식이 부족하고 각종 건설 및 전기공사의 부실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 보고 산업인력공단에 '자격증 대여행위 상설 모니터링반'을 설치,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자격증 대여를 통해 각종 공사요건을 충족시키고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개별 기업의 수요가 많다고 판단해 대여기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및 이중취업 등으로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부는 3년마다 '국가기술자격제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도록 해 산업현장 수요를 정확히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기관과 단체 등도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 1% 상승

2003년 건설 엔지니어링 기술자 임금이 전년대비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전국 1천483개 업체 5만5천938명(건설부문 995개 업체 4만9천477명)의 엔지니어링 기술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발표한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7월 현재 건설기술자의 일일 평균임금은 11만8천688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2년의 11만7천544원에서 1.0%

오른 금액으로 원자력발전 부문의 8.0%, 산업공장 부문의 13.5%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전반적 건설시장이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이중 고급기술자의 임금은 13만2천936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에 머물렀으며 특급기술자 임금은 15만8천335원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건축물 공시제 도입

허가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개축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돼 매매 등에 불이익이 따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늘어나는 위법 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 가칭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는 허가없이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 개조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특별기재란에 '위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영업허가 신청시 또는 건축물 매매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상건축물은 상기는 물론 아파트도 대상에 포함된다.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축규제 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규제위의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건축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시행규칙의 경우 개정작업에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위법건축물 공시제도는 상반기 안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전국의 위법건축물 적발건수는 99년 3만1천136건에서 2000년 2만5천462건으로 18% 가량 감소했으나 이후 2001년 2만8천475건, 2002년 4만741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모델하우스 발코니 구조변경 금지

앞으로 견본주택(아파트 모델하우스) 설치시 인접대지로부터 일정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구조변경할 수 없게된다. 또 철거 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를 VTR 등으로 촬영해 입주시점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견본주택건축기준을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월 26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화재발생시 인접건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견본주택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3m 이상 이격거리를 두고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1m 이상 띄워 배치하도록 했다. 또 내부평면의 경우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재료와 동일하게 설치하고 발코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실이나 침실 등의 다른 구조로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발코니와 거실사이에는 설계도서대로 구획분리를 위한 창문

등 외벽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기준은 이와 함께 설비 등도 실제 공급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로 시공하고 옵션품목을 전시할 때에는 가로 25cm, 세로 15cm 이상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재료의 명세서 및 촬영한 VTR 필름 등은 공급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제출토록 하고 부분을 비치해 항시 입주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준은 사용검사권자가 사용검사시 완공된 주택이 견본주택과 동일한 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견본주택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화재에 대비해 가구당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유사시 대피할 수 있도록 외부로 통하는 출구(비상구)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하천변 건물신축 못한다

7월 하순부터 제방이 없더라도 하천구역으로 분류되는 하천변 지역에는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없게 된다. 또 택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폐천부지는 치수 및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부지 등으로 우선 활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절차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하천법에 따르면 제방이 없는 하천변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해진 계획하폭선을 기준으로 하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안에서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물이 흐른 토지'를 지정 절차없이 하천구역으로 보고 있어

제방이 없는 하천변 지역의 경계선이 불분명, 하천관리청과 토지소유자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 국가 및 지방 하천 등 3만 233km의 25%에 달하는 하천변에 음식점 등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 홍수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는 대부분 저지대로 홍수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택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치수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한 목적에 우선 활용토록 명시했다. 개정 하천법은 하천구역내에서는 수해위험 등 긴급사안이 발생해 불법 시설물의 급속한 철거가 필요할 경우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주택리모델링 부가세 면제

2004년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 리모델링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는 세법을 개정, 2004년부터는 리모델링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세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와 관련,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효율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재건축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부여했었다.

재경부는 그러나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조세제한특별법을 개정, 새

해부터 추진되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토록 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리모델링 후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규모의 120%를 초과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리모델링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을 약 3% 정도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설공사장 소음규제 강화

오는 2009년부터 건설공사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지역 및 시간대에 따라 각 5dB씩 강화된다. 또 그동안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도 주택 및 상가시설이 조성된 지역일 경우 소음·진동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및 건설현장의 저소음 기계·장비·공법 등의 개발을 촉진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1월 15일자로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과 공공도서관 주변을 비롯 △학교 △병원시설 등의 인근지역 공사장 소음규제 기준을 시간대별로 5dB씩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낮(08:00~18:00)시간에는 현행 70에서 65dB로 조정되고 아침·저녁(05:00~08:00, 18:00~22:00)에는 65에서 60dB로, 밤(22:00~05:00)에는 65에서 50dB로 강화된다. 또 그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낮(75→

70dB) △아침·저녁(70→65dB) △밤(55→50dB) 등 각각 5dB씩 규제기준을 조정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규제기준을 강화하되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은 이와 함께 올 7월1일부터는 지금까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던 산업단지내 소음·진동에 대해 주택 및 상가시설이 조성돼 있을 경우 생활소음·진동으로 동일한 규제기준을 적용기로 했다.

규제대상으로는 건설공사현장과 일반사업장, 배출시설 미설치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고 산업단지 및 전용공업지역, 수출자유지역내 소음·진동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밖에 발파소음에 대해서는 지속시간이 극히 짧은 특성을 감안해 1월 15일부터 연속소음의 규제기준보다 지역·시간대별로 10dB씩 완화하기로 했다.

판교신도시 건설계획 확정

서울 강남권 주택수요 흡수 등을 위해 추진되는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이 2004년 하반기에 본격 착공된다. 이곳에는 40평을 초과하는 대형 평형을 포함 2만9천700가구의 주택이 건설되고 벤처단지과 5만평 규모의 친수테마파크도 조성된다. 또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도로 6개 노선(57.3km)이 신설·확장되고 신분당선 등의 대중교통망이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04년 9월까지 실시계획수립 등을 거쳐 도시개발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284만평에 공동주택 2만6천974가구, 단독주택 2천726가구 등 총 2만9천7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규모별로는 소형(60㎡ 이하)의 경우 전체의 32%인 9천500가구, 중형(60~85㎡ 이하)은 34%인 1만100가구, 대형(85㎡ 초과)은 34%인 1만100가구 등이다. 대형 평형 가운데 40평형 초과는 당초 1천가구에서 2천274가구로 1천774가구가 늘었다.

건교부는 또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공립학교 22개를 신설하고 자립형 사립고 등을 유치하는 동시에 '교육시설구역'을 별도로 설치해 IT고등학교와 디지털대학 등이 들어서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만평을 벤처단지로, 8만평은 상업업무용지로 각각 배치하는 등 전체의 10%를 자족기능 확보용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해 100만평의 공공녹지를 확보하고 금토천과 운중천 합류지점에 5만평 규모의 친수테마파크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건교부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07년 입주 전까지 영덕~양재 고속화도로와 탄천변대로(판교~성남대로간), 판교~분당간도로, 풍덕천~수서연결도로 등 4개 노선을 신설하고 국지도 23호선, 국지도 57호선 등 2개 노선을 확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신분당선전철과 광역버스, BRT(광역급행버스) 등 대중교통 기능을 강화하고 보행자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등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녹색교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박병순 편집위원 / 타구조 소장 / thekujo@nate.com〉